

문서번호 : 채널마케팅본부2010-131

시행일자 : 2010.11.23.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제 목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 (커머더티,농산물)

1. 귀 사(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행)에서 판매중인 당사 수익증권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펀드

-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Commodity 인덱스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나. 변경내용

-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다. 기타 변경내용 (로저스 농산물 限)

- 종류 I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포함)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라. 시행일 : 2010년 11월 24일 (수)

- * 첨 부 : 1. 변경대비표 1부.
2. 변경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각 1부 (이상 E-Mail 송부). 끝.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채널마케팅본부장



수 신 처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교보증권, 기업은행,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
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
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제주은행,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하이
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SBC,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SC제일은행, SK증권 (이상 가나다순)

집합투자증권 정정신고 주요 내용

1. 투자신탁명 :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Commodity 인덱스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상 2개 투자신탁)

2. 정정신고 내용 :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 위의 변경사항 이외에 각 투자신탁별로 아래 사항들이 각각 변경됩니다.

펀드명	변경내용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종류 I 수익증권 가입자격 수정 (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포함)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소규모펀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효력발생일 : 2010년 11월 24일

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

1)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p>①~② (생략)</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종류 I</p> <p>수익자자격: <u>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종류 I</p> <p>수익자자격: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u>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u></p> <p>4. 종류 C-W</p> <p>수익자자격: <u>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u></p> <p><u>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해당사항 없음</u></p> <p>④ (현행과 같음)</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⑤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종류 C-W 수익증권</p> <p>②~⑤ (현행과 같음)</p>
제39조(보수)	<p>①~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종류 A 수익증권) : (생략)</p> <p>(종류 B 수익증권) : (생략)</p> <p>(종류 I 수익증권) :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종류 A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B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I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C-W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생략)</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A 및 종류 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2. 종류B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1. 종류B 수익증권 이외의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 ----- ----- ----- -----</p>

2)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Commodity 인덱스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p>①~② (생략)</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종류 C-W 수익자자격: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부과여부: 해당사항 없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⑤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종류 C-W 수익증권</u></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39조(보수)</p>	<p>①~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종류 A 수익증권) : (생략)</p> <p>(종류 B 수익증권) : (생략)</p> <p>(종류 I 수익증권) :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종류 A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B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I 수익증권) : (현행과 같음)</p> <p>(종류 C-W 수익증권)</p> <p>1.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u></p> <p>2.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u></p> <p>3. <u>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u></p> <p>4.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u></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 (생략)</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u>종류A 및 종류 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u></p> <p>2. <u>종류B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u></p> <p>③ (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1. <u>종류B 수익증권 이외의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